

대법원 2022. 12. 1 선고 2022다2724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

A

피 고

대한민국 외 3명

판 결 선 고

2022. 12. 1.

판 결 선 고

2022. 12. 1

원심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
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○○○